생긴 차액 643억 8백만원중 일부인 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 재정사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로써 부족전출액은 금년도 담배소비세 세입결산후 추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 報告事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長虎** 專門委員 金長虎입니다.

지금부터 1994年度 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檢報告드리겠습니다.

---

(報 告)

1994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문화관광국소관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이 예산(안)은 1994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11월 10일 소관별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산규모

가. 세 입 : 없음

나. 세 출 : (단위 : 천원)

| '94추가경정예산(안) | '94기정예산 | 증감액 | 증감비(%) |
|---|---|---|---|
| 49,366,237 | 48,866,237 | 500,000 | 1 |

3. 예산내용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과 목 | 예산(안) | 기정예산 | 산술기초 |
|---|---|---|---|
| 문화예술 진흥비 | 49,366,237 | 48,866,237 | 500,000 |
| 관광 및 국제교류 | 1,732,147 | 1,232,147 | 500,000 |
| 국 제 교 류 | 1,331,232 | 831,232 | 500,000 |
| 국 제 교 류 | 1,331,232 | 831,232 | 500,000 |
| 출 연 금 | 500,000 | 0 | 500,000 |

4. 검토의견

○ 내무부에서 민법 제32조에 의거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에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출연하는 기금임.

○ 서울특별시에서는 5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있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연금 총규모는 61억원으로 서울시 자치구에서 5억2천만원 기타 시·도 20억, 기타 시·군·구에서 3,115백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행정 국제화 추세에 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영역확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음은 敎育廳轉出金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

(報 告)

1994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교육청전출금에대한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이 예산(안)은 1994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11월 10일 소관별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산규모

가. 세 입 : 없음

나. 세 출 : (단위 : 천원)

| '94추가경정예산(안) | '94기정예산 | 증감액 | 증감비(%) |
|---|---|---|---|
| 380,569,075 | 293,126,075 | 87,443,000 | 36.6 |

3. 예산내역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과 목 | 예산(안) | 기정예산 | 증 감 액 |
|---|---|---|---|
| 교 육 비 | 380,569,075 | 293,126,075 | 87,443,000 |
| 사 회 교 육 | 365,781,592 | 278,338,592 | 87,443,000 |
| 교육비지원 | 365,781,592 | 278,338,592 | 87,443,000 |
| 교원봉급부담금(전출금) | 201,049,192 | 143,606,192 | 57,443,000 |
| 담배소비세지원(전출금) | 158,615,400 | 128,615,400 | 30,000,000 |

4. 검토의견

○ 공립교원 봉급부담금은 지방교육재정 교

부금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금액으로 이는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에 의한 직무수당의 봉급액의 합산분을 반영한 것이며,

○ 담배소비세 지원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금액으로 이는 전출비율이 종전 30%에서 45%로 개정됨에 따른 금액임.

－ 따라서 담배소비세 전출금은 총 192,923백만원으로서, 종전에 128,615,400천원을 계상하였고, 증액분 64,308,400천원은 추가계상하여야 하나,

－ 금회에는 30,000백만원을 반영하고, 잔액을 추후 정산할 예정임.

○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사료됨.

○ 문제점으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교원 봉급 총액은 205,366,192천원으로서, 서울특별시 전출금이 금회에 전출되는 금액을 포함해서 총 201,049,192천원인바, 부족액 4,317,000천원에 대하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案件의 성질상 質疑 答辯은 一問一答으로 審査를 進行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의 異議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一問一答으로 審査를 進行하겠습니다.

그러면 本 件에 대해서 먼저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 馥委員, 質問해 주세요.

**○孫 馥委員** 孫 馥委員입니다.

公立學校 敎員俸給 支援하고, 담배소비세 金額은 法定 轉入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敎員俸給의 부족분 43億원은 당연히 市에서 法定 轉出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 轉出金이 增額分 643億원을 追加 計上했는데 금회에는 300億원만 反映하고 殘額을 추후 精算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43億원도 追加로 轉出할 것인지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고, 43億원은 어떠한 豫算項目으로 支援할 것인지 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地方自治團體 國際交流財團은 94年度에 設立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特別市 自治團體에서는 5億원을 出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財源을 가지고 一般會計에서 出捐을 할 것인지 여기에서 具體的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喆鎬** 지금 答辯해 주시죠.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孫 馥委員님 質問하신 부분에 대해서 國際交流財團 部分에서는 제가 答辯을리고 敎育廳 轉出金에 대해서는 우리 豫算課長이 答辯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交流財團 5億원은 昨年 年初부터 內務部에서 出捐要請을 했고 또 일부 대부분의 地方自治團體에서는 이미 出捐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市에서는 아무런 豫算에 이미 規定된 바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 支援을 못하던 형편이고 이번 追更을 하는 機會를 통해서 5億원을 지금 計上을 했는데 이것은 이것을 위한 特別한 財源이 아니고 一般追更에 포괄적으로 一般的 市費財源으로 이렇게 計上한 것입니다.

**○豫算擔當官 申東雨** 敎育廳 支援金에 대해서는 豫算擔當官이 소상히 答辯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 規定에 의해서 公立中等敎員의 本俸分에 대한 人件費를 서울市 一般會計에서 지금 支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制度가 93年度 12月 31日字로 職務手當, 이것이 本俸의 한 40%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公務員 報酬規程 改編과 함께 本俸에 編入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市에서 그 전에는 敎育廳 豫算으로 支拂을 하던 職務手當分을 本俸에 編入해